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예천군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2.2.24. ~ 2022.2.25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**주택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54				
	지번 54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 2,672.0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430.1399㎡	건폐율 16.10%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15층		
	주용도 공동주택,업무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		
	최고높이 46.6m	용적률 189.06%	연면적 합계 5,051.799㎡	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건축시공 분야	· 각 층(2층부터)의 통신실과 오피스텔 출입문의 간섭을 고려하여 문의 위치 또는 여닫이 방향, 1층의 계단실 출입문 방향을 피난 방향으로 여닫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.			
	구조 분야	· 동 평면도 형상이 비정형이기에 중심부의 코어 외벽 두께를 200mm이상으로 설계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원활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.			
	토목 분야	· 기계실, 전기실, 물탱크, 방제실 등의 경우 1층보다는 지하층 편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. · 차량 입출입 동선 분리 및 보안시설(차단기) 설치 검토가 필요. 보도와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.			
	설계·계획 분야	· 외부 공간 계획에 있어 차도와 인도, 조경공간의 구획을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정리가 필요. 전기충전시설의 설치 고려. · 주상복합 세대의 크기로 보아 가구당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. (주차 공간 추가 확보)주차 면이 부족하면 주변 도로에 주차하게 되므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. · 도로에서 부지로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필요. 특히, 부지로부터의 진출입시의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. · 이삿짐 차량, 분리수거 차량, 화물차 등 회전반경에 대한 검토 필요. ·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홀의 경우, 자연채광이 가능한 창문이 필요함. 피난이나 주간대의 이동에 따른 채광유입. 피난 시 조도 확보 차원에서 양쪽으로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. · 1층의 1호의 아파트 계획은 기계실, 사무실 등과 혼재되어 있어,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공간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 · 법적 기준보다는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.			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경관·디자인분야	· 건축물의 외관 칼라가 주변 경관과 어우릴 수 있는 칼라로 전면 수정. · 칼라의 채도와 명도 등이 다소 어두워 밝은 칼라로 수정.
	소방 분야	· 소화용수 설비 및 연결 송수구는 소방자동차의 위치에서 가깝고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건물주변의 장애물로 인하여 연결 송수 설비의 육안 확인 및 소방대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검토. · 소방자동차 진입로에는 경계석 등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, 구조상 불가피하여 경계석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로 설치하거나 그 높이를 최소화 검토. · 소방차 진입로 회전반경은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한지 검토. ·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(활동 공간)의 바닥은 시·도별 보유한 특수 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.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